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전기·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재활용실적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고 있으나, 폐전기·폐전자제품이 아닌 다른 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기 위하여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. . . ~ .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“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”를 “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”로, “폐전기·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”를 “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”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(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)”를 “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한 원료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

※ EcoAS(www.ecoas.or.kr)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제출인	상 호	전 화 번 호		
	주 소	법 인 등 록 번 호		
	대 표 자 성 명	사 업 자 등 록 번 호		

자료 제출내용	①제품군	②제품명	③재활용 원료 사용량(kg)	비고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
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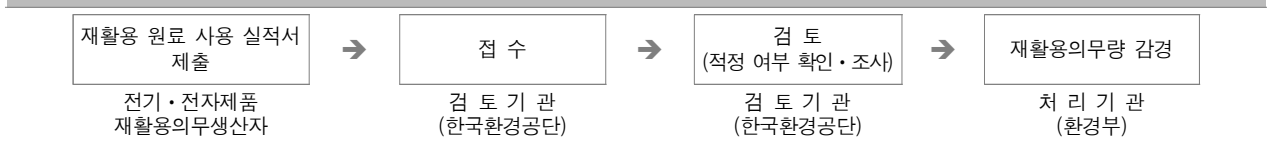
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전기·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----

작성방법

- ①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②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명을 적습니다.
- ③ 재활용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)	제4조(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)
① · ② (생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에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(전기·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)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<u>폐전기·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</u>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</u> ----- ----- ----- <u>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출해야</u> ----- -.
1. <u>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(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)</u> 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1. <u>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한 원료</u> ----- ----- ----- 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